

심사보고서

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

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51
----------	-----

2024. 11. 25.(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19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승환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 - 의료원별 경영 정상화까지 소요 예상금액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지원 후 도에서 이자보전을 통한 의료원 재정부담 경감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 - ※ '23. 11. ~ 12.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융자(청주 120억, 충주 100억)
 -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, 발생이자(3%)
 - 도, 5년 거치기간 이자만 지원('24. ~ 28.)
- 출연금액 : 660,000천원 (도비 100%)
 - 청주의료원 360,000천원, 충주의료원 300,000천원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청주·충주의료원이 2022년 6월 전담병원 해제 이후 심각한 경영 악화에 직면함.
 -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양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도모 및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제15조제1항제5호3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4)에 따라 2023년 9월,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

3) 제15조(융자대상)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

4) 제7조(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) ① 조례 제15조 융자대상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3퍼센

거치 10년 균등상환 및 연이율 3%의 조건으로 220억을 용자 지원함.

※용자금(총 220억원): 청주의료원 120억원, 충주의료원 100억원

○ 그러나 이후에도 양 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는 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영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역개발기금 용자금의 2025년도 이자분(연이율 3%)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함.

○ 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5)에 따라 출연 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것임.

※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현황

- 1) 설치근거: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- 2) 설치목적: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
- 3) 설치년도: 2017년
- 4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3년도 말 조성액 ^㉑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^㉒ = ^㉓ + ^㉑
	수입 ^㉓	지출 ^㉔	증감 ^㉕ = ^㉓ - ^㉔	
848,052,710	218,383,566	211,489,025	6,894,541	854,947,251

※ 충청북도,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청주·충주의료원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

트로 한다.

②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

5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.

- 법 제18조에 따라 운영은 사업 수익금, 보조금, 출연금,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할 수 있고,
 - 또한, 「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,
 - 본 계획안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을 위한 출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8조(재원)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, 제17조에 따른 보조금·출연금 및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□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의2(기금과 보조금 등) 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, 충청북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청주·충주 의료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환자의 진료를 추진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한 만큼,
 - 이는 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6)에 따른 사업이자 공익적 사업에 포함되는 바, 충청북도의 본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절차 상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(동의)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본 2025년도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

6) 제7조(사업)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7.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
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
지원의 경우, 출연계획안이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되었음.

- 물론 두 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 시점은 지역개발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이 11월25일, 2025년 당초예산안은 12월11일 이지만,
- 출연계획안의 가부(可否)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025년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었다는 점에서 법에 따른 사전 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음.
- 이에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을 위한 출연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 필요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절차상 2025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전에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」

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7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 - 의료원별 경영 정상화까지 소요 예상금액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지원 후 도에서 이자보전을 통한 의료원 재정부담 경감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 - ※ '23. 11. ~ 12.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융자(청주 120억, 충주 100억)
 -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, 발생이자(3%)
 - 도, 5년 거치기간 이자만 지원('24. ~ 28.)
- 출연금액 : 660,000천원 (도비 100%)
 - 청주의료원 360,000천원, 충주의료원 300,000천원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공공의료팀	임헌표	곽경희	이정건	3134

기관명	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 장 : 청주의료원(김영규), 충주의료원(윤창규)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주의료원 :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(사직동) · 충주의료원 : 충주시 안림로 239-50번지(안림동) - 주요사업 : 지역주민 진료사업,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재난 시 환자 진료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 등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출연 예정금액 : 660,000천원</u>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2024년 예산액 (출연액)</th> <th rowspan="2">2025년 요구액</th> <th colspan="5">재원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국비</th> <th>도비</th> <th>시군비</th> <th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660,000</td> <td>660,000</td> <td>660,000</td> <td>-</td> <td>660,000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분	2024년 예산액 (출연액)	2025년 요구액	재원별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	계	660,000	660,000	660,000	-	660,000	-	-
구분	2024년 예산액 (출연액)	2025년 요구액	재원별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																					
계	660,000	660,000	660,000	-	660,000	-	-																			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및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 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~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20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음 ○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, 원활한 경영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상환 이자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]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: 해당없음

2]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 청주 및 충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 출연기관(재단법인)으로
 -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'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음
-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발생 이자는 3% 이며,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하되, 도에서는 일정 기간('24. ~ '28. / 총 33억원)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음
-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'원안의결'을 건의드릴

3]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4년 예산액(최종)(C)	2025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	660,000	660,000	660,000	0	0

4]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청주의료원

설립근거	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				전화번호 : 043-279-0114		
					홈페이지 : cjmc.or.kr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909 관립자혜의원 개설 2005 충청북도청주의료원(특수법인) 전환 2022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 2023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직원현황 (24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711명		692명		19명(기간제 근로자)	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
	이시장	김영규	청주의료원 원장		'22.08.01. ~ 25.07.31.(3년)		
	이사	정일웅	청주의료원 외과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〃	한찬오	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		재임기간		
	〃	이진숙	청주시 서원보건소장		재임기간		
	〃	김혜란	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이사		'22.04.01. ~ 25.03.31.(3년)		
	〃	최영락	온유한정신건강의학의원 원장		'22.09.16. ~ 25.09.15.(3년)		
	〃	이재숙	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지회 명예회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〃	이명환	대한적십자봉사회 진천군협의회 회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〃	김용호	前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감사	연방희	연방희세무사사무소 대표		'23.10.10. ~ 26.10.09.(3년)		
	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주민 진료사업,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재난 시 환자 진료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, 의료 및 치료기술 보급,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(백만원)	연도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'23.12.31.기준	자 산	32,479
	예산액	108,182	119,289	99,164		부 채	33,807
	지자체 지원액	11,955	8,846	2,403		자 본	△1,328
경영성과 (백만원) '23.12.31.기준	총수입			총지출		당기순이익	
	60,243			75,717		△15,474	

충주의료원

설립근거	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				전화번호 : 043-871-0114		
					홈페이지 : cjunct.or.kr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1937 독립 청주병원 충주분원 설립 개원 ▸ 2005 충청북도충주의료원(특수법인) 전환 ▸ 2012 안림동 신축병원 이전 ▸ 2022 재할·호스피스병동 증축 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직원현황 (*24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429명		414명		15명(기간제 근로자)	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
	이사장	윤창규	충주의료원 원장		2022.08.01. ~ 25.07.31.(3년)		
	이사	한찬오	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		재임기간		
	이사	김명자	충주시 보건소장		재임기간		
	이사	김대중	웨딩클래스 대표		2024.02.05. ~ 27.02.04.(3년)		
	이사	원영숙	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위원		2022.02.09. ~ 25.02.10.(3년)		
	이사	김동건	제일안과 원장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	
	이사	오성록	前 충청북도 보건사무관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	
	이사	권정희	前 충주시의회 부의장		2024.03.02. ~ 27.03.01.(3년)		
	이사	김영훈	충주컨벤션센터 대표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	
	이사	이운영	CJB청주방송 본부장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	
	감사	나기태	법무법인 열린법률사무소 변호사		2023.10.10. ~ 26.10.09.(3년)		
	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지역주민 진료사업,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재난 시 환자 진료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, 의료 및 치료기술 보급,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(백만원)	연도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*23.12.31.기준	자 산	31,973
	예산액	101,740	99,049	86,276		부 채	17,950
	지자체 지원액	4,578	5,364	3,199		자 본	14,023
경영성과 (백만원) *23.12.31.기준	총수입			총지출		당기순이익	
	38,609			49,881		△11,272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	출연	660,000천원 (도비 660,000천원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및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

□ 출연개요

- 출연근거
 -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(보조금 등)
 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 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- 사업명 :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사업대상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액 : 660,000천원(도비 660,000천원) * 청주 360,000, 충주 300,000
- 사업내용 : 청주·충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
□ 산출기초

- '25년 출연요구액 : 660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계	660,000		
청주의료원	360,000	융자금 12,000,000천원 x 발생이자 3% = 360,000천원	
충주의료원	300,000	융자금 10,000,000천원 x 발생이자 3% = 300,000천원	

□ 기대효과

-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,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마련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어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
-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공공의료 역량 저하

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·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